

[별지]

신 고 내 용

1. 신고의 요지

신고인은 피신고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i)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이익제공 강요” · “불이익 제공” (ii) “거래거절” 중 “기타의 거래거절” 및 (iii) “사업활동방해” 중 “기타의 사업활동방해”로 신고하오니, 귀 위원회께서는 엄중히 심사하시어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등 합당한 처벌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사자의 관계

신고인은 주세법에 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소매점에 맥주를 판매하는 주류도매업자이고(소갑 제1호증), 피신고인은 맥주의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주류제조자입니다.

신고인은 전 상호인 정도주류 유회사를 사용하던 시절인 2004년부터 피신고인과 맥주 공급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래해 왔습니다(소갑 제2호증). 신고인의 상호가 정도주류에서 현재와 같이 변경된 것은 2006년 1월 25일입니다.

한편, 면허를 받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경우 국세청의 “주류의 양도 · 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11-17호, 소갑 제3호증)에 의해 반드시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만 주류를 구입해야 하므로, 신고인이 피신고인로부터 맥주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곧바로 영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

가. 피신고인의 신고인에 대한 거둬진 무리한 추가담보 제공 요구

(1) 최초의 담보 제공 - 2005년 1월, 1천만 원

신고인은 피신고인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2005년 1월에 산업금융채권 1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이외에 다른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없었습니다(소갑 제4호증¹).

한편, 피신고인은 카스맥주의 제품력이 강하지 않아 판매량이 많지 않자, 카스맥주의 판매를 진작시키기 위해 2007년에는 신고인에게 담보대비 채권비용 약 890%까지 카스맥주를 공급해 주기도 하였습니다(소갑 제5호증²).

¹ 담보로 제공한 산업금융채권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신고인은 피신고인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동일 가액의 다른 유가증권을 제공하여 계속 담보를 제공해 왔는바, 가장 최근에 신고인이 피신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은 중소기업은행의 2013년 8월 28일자 발행 1천만 원의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만기일 2015년 8월 28일)였습니다.

² 2007년도 외상매입금명세서에 의하면 피신고인에 대한 외상매입채무가 약 8천9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당시 담보로 제공한 산업금융채권 1천만 원의 약 8.9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2) 피신고인의 1차 추가담보 제공 요구 - 2010년 11월, 1억 원

위와 같이 카스맥주의 판매 진작을 위해 신고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던 피신고인은 카스맥주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제품력도 좋아지자 2010년 11월경 신고인에게 결제조건을 10일 단위 20일 결제(이하 **“RPC 10/20”**이라고 합니다³)로 변경하자고 하면서 그 대신에 추가로 1억 원의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의 갑작스런 1억 원이 되는 추가담보 요구는 신고인에게 매우 부담이 되었지만, 신고인의 입장에서는 피신고인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업의 계속 여부를 좌우하는 것이었으므로, 신고인은 소속 직원에게 부탁하여 2010년 11월에 피신고인에게 소속 직원의 아파트에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소갑 제6호중).

(3) 피신고인의 2차 추가담보 제공 요구 - 2011년 3월, 6천만 원

그런데,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한 지 채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2011년 3월경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또다시 결제조건을 **“RPC 10/30”**⁴

³ **“10일 단위 20일 결제조건” 즉 “RPC 10/20”이란 10일간 발생한 외상채무를 20일 후에 결제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1. 1. ~ 1. 10.의 기간 동안 외상매입한 구매대금을 그로부터 20일 뒤인 1. 30.에 결제하면 RPC 10/20의 결제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⁴ **“RPC 10/30” 즉 “10일 단위 30일 결제조건”이란 10일간 발생한 외상채무를 30일 후에 결제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1. 1. ~ 1. 10.의 기간 동안 외상매입한 구매대금을 그로부터 30일 뒤인 2. 10.에 결제하면 RPC 10/30의 결제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RPC 10/30은 RPC 10/20에 비해 10의 신용제공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으로 변경할 테니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한 지 3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해 달라는 것은 신고인에게 너무나도 부담 되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인의 사업 계속 여부는 피신고인과의 거래관계 유지에 의해 좌우되므로, 이번에도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추가담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처지였고 결국 피신고인에게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신고인이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또다시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고인의 추가담보 제공이 지연되자, 피신고인은 추가담보의 제공을 거듭 독촉하였고, 2011년 12월에는 추가담보 미제공을 이유로 카스맥주의 출고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신고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신고인은 더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2012년 2월에 가까스로 6천만 원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추가담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소갑 제7호증⁵).

⁵ 담보로 제공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의 계약기간은 1년인바, 1년의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신고인은 다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신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신고인이 피신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3년 1월 31일에 발급받은 계약기간 1년짜리의 이행(상품판매대

신고인은 피신고인과 거래를 시작한 2004년 이래 1천만 원의 담보만 제공하였을 뿐이고 피신고인은 담보 대비 채권비율 약 890%까지 맥주를 공급해 줬는데, 피신고인이 결제조건을 RPC 체제로 바꾸면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약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총 합계 1억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은 신고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고인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피신고인에게 카스맥주를 계속 공급 받아야만 했고 카스맥주를 피신고인 이외의 다른 곳에서 공급받은 방도가 없었으므로, 신고인으로서 피신고인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2010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추가담보로 총 합계 1억6천만 원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4) 피신고인의 3차 추가담보 제공 요구(2013년 1월, 1억 원)와 신고인의 거절

그런데, 신고인이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2013년 1월에 피신고인은 또다시 신고인에게 거래금액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를 대며 추가담보로 1억 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짧은 기간 동안 1억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안은 신고인으로서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2010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이미 총 합계 1억6천만 원의 추가담

금)보증보험증권이었습니다.

보를 제공받았으면서도 그로부터 채 1년도 안 지난 2013년 1월에 또다시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피신고인의 처사는, 신고인의 입장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신고인은 도저히 추가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신고인에게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며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고인은 신고인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신고인은 2013년 5월에 피신고인에게 더 이상의 추가담보 제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나. 피신고인의 출고조절 · 결제조건 축소 · 공급정지 및 신고인의 도산

(1) 피신고인의 출고조절 및 신고인의 거래처 상실

신고인이 1억 원의 추가담보 제공을 거부하자, 피신고인은 2013년 7월 중순경 3일 동안 신고인에게 카스맥주의 출고량을 제한하거나 출고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신고인의 출고조절로 인해 신고인은 거래처에 대한 맥주 공급이 지연되어 1000여개가 넘는 거래처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심지어 거래처를 잃는 피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거래처로 월 매출액 3억 원 정도 되는 경기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코사마트, 이하 “코사마트”라고 합니다)을 잃은 것은 신고인으로서 큰 손실이었습니다.

신고인은 2012년 8월 27일에 코사마트와 계약기간을 2012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소갑 제8호증), 이 당시 피신고인의 출고조절로 인해 맥주 공급이 지연된 것이 원인이 되어 계약체결 1년만인 2013년 8월 31일에 거래계약을 해지당하고 말았습니다.

(2) 신고인의 거래규모 및 채무액 축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피신고인의 추가담보 요구 및 강압에 못이긴 신고인의 추가담보 제공 약속

한편, 가장 큰 거래처인 코사마트와의 거래관계가 중단됨에 따라 신고인의 피신고인과의 거래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신고인의 피신고인에 대한 채무액도 2억5천만 원 이상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규모 및 채무액이 감소함에 따라 신고인은 더 이상 피신고인이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인의 예상과 달리 피신고인은 신고인의 거래규모 및 채무액 감소와 추가담보 제공은 서로 무관하다며 계속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신고인은 이러한 피신고인의 처사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으나, (i) 이미 추가담보 제공을 거절하였다가 피신고인으로부터 출고조절을 당해 거래처를 상실하는 큰 불이익을 당한 상태였고 (ii) 피신고인과의 거래관계 유지하는 신고인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으므로, 피신고인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신고인은 2013년 10월에 피신고인에게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다만 이를 분할하여 2013년 10월 25일까지 5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하고 다시 2013년 12월 말까지 5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해 주기로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3) 신고인의 추가담보 제공 실패, 이를 빌미로 한 피신고인의 일방적인 결제조건 축소 및 출고조절 · 배송지연을 통한 지속적인 압박, 그리고 신고인의 도산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추가담보 제공을 약속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코사마트와의 거래중단으로 월 3억 원 정도의 매출이 감소한 신고인에게는 도저히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해 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신고인은 또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줘 아파트 2채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으나(소갑 제9호증), 피신고인은 감정평가 결과 담보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대며 거부하였습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신고인이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은 계속적으로 신고인에게 1억 원의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하였고, 2013년 11월 29일에는 피신고인의 담당 직원이 신고인에게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2013년 12월부터 결제조건을 “RPC 10/30”에서 “RPC 10/20”으로 축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소갑 제10호증).

피신고인이 일방적으로 결제조건을 축소하면, RPC 10/30에서 발생했던 외상매

입채무와 RPC 10/20로 변경된 후 발생한 외상매입채무가 동시에 결제일에 도달하여, 신고인은 한꺼번에 20일치의 외상매입채무를 결제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아야만 하므로 자금압박을 더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도저히 신고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피신고인의 신고인에 대한 압박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계속된 압박으로 인해 외상매입채무를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자, 피신고인은 이를 빌미로 2013년 12월 27일에 카스맥주에 대한 출고량 조절 및 배송시간 지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신고인은 2013년 12월 30일 카스맥주에 대한 출고량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배송되어야 할 카스맥주를 배송해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 다음날인 2013년 12월 31일에 배송을 나가야 할 신고인의 판매차량 16대는 배송을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피신고인의 일방적인 결제조건 축소 및 카스맥주에 대한 출고조절·배송지연에 의해 신고인은 사업상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피신고인은 2014년 1월 2일부터는 아예 신고인에 대한 출고를 정지하였고, 이로 인해 신고인은 2014년 1월 6일에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2014년 1월 15일에는 당좌수표가 부도가 나 사실상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 피신고인의 불공정거래행위

가. 피신고인의 행위에 대해 적용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무리한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신고인의 추가 담보 제공의 거절 또는 실패를 빌미 삼아 출고조절 · 배송지연 및 일방적인 결제조건 축소 등의 불이익을 가하며, 결국에는 신고인에 대한 출고를 정지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i)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이익제공 강요” · “불이익 제공”, (ii) “거래거절” 중 “기타의 거래거절” 및 (iii) “사업활동방해” 중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됩니다.

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이익제공 강요 및 불이익 제공 관련

(1) 피신고인의 거래상 지위 인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 고시에 의해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반드시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만 주류를 구입해야 하므로, 신고인이 피신고인이 제조 · 판매하는 카스맥주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피신고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카스맥주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엄청난 타격을 입고 곧바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신고인과의 거래관계에서 피신고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2) 피신고인의 거듭된 추가담보 제공 요구가 이익제공 강요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신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고인에게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 동안 총 합계 2억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은 “이익제공 강요”에 해당됨이 명백합니다.

특히, (i) “피신고인이 2011년 3월에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였으나, 신고인이 여력이 안 돼 담보제공을 지연하자, 피신고인이 2011년 12월에 카스맥주의 출고시간을 조절하여 압박하여 신고인으로 2012년 2월에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행위”와 (ii) “피신고인이 2013년 1월에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였으나, 신고인이 도저히 여력이 안 돼 이를 거부하자, 피신고인이 2013년 7월 중순경 3일 동안 신고인에게 카스맥주 출고를 제한하거나 출고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거래처를 상실하는 피해를 입은 신고인이 어쩔 수 없이 2013년 9월에 피신고인에게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만든 행위”는 “이익제공 강요”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론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피신고인의 출고조절 · 결제조건 축소 · 출고정지가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이익 제공”은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 ·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고인이 신고인에 대해 (i) 2013년 7월 중순경 3일 동안 카스맥주의 출고를 제한하거나 출고시간을 조절한 행위, (ii) 2013년 12월에 일방적으로 결제조건을 RPC 10/30에서 RPC 10/20으로 축소한 행위 및 (iii) 2013년 12월 말에 카스맥주의 출고를 조절하고 배송을 지연하며 결국 2014년 1월에 카스맥주의 출고를 정지한 행위가 “불이익 제공”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부당성 여부

거래상 지위의 남용의 경우 “공정거래저해성”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피신고인의 이익제공 강요 및 불이익 제공은 공정거래저해성 즉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 피신고인은 2004년부터 신고인과 거래관계를 맺은 후 1천만 원의 담보만을 제공받은 채 담보대비 채권비율 약 890%까지 카스맥주를 공급해 주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볼 때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총 합계 2억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피신고인은 신고인이 1억 원을 추가담보를 제공한 2010년 11월부터 약 4개월만인 2011년 3월에 또다시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하는 하였는바, 이러한 점은 피신고인의 행위의 부당성을 강화시켜 준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신고인의 감당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년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총 합계 2억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체결한 거래계약서에는 제6조 제1항에 “을(신고인)은 갑(피신고인)과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에 대한 담보로 일정액

의 현금이나 부동산,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보물<보증보험증권, 기타 유가증권>을 갑에게 담보로써 제공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위 거래계약서 어디에도 피신고인이 요구할 경우 신고인에게 추가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체결할 거래계약서에 의하면 담보의 제공은 신고인의 선택사항에 불과할 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신고인에게는 피신고인의 요구에 따라 추가담보를 제공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추가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신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고조절 및 결제조건 축소 등의 불이익을 가하면서 추가담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심지어 출고를 정지하는 행위까지 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피신고인은 2013년 1월에 신고인의 거래규모 및 채무액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였으나, 그 후 피신고인의 출고조절로 인해 신고인이 최대 거래처인 코사마트를 잃게 됨으로써 신고인의 거래규모 및 채무액도 2억5천만 원 이상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이 이러한 사정변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계속해서 신고인에게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피신고인이 위와 같이 부당한 추가담보 요구를 빌미로 2013년 12월에 신고인에 대해 결제조건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더 나아가 2013년 12월 말에는 출고조절의 불이익까지 가한 것은 부당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5)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i)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고, (ii) 이익제공 강요 및 불이익 제공 행위가 인정되며, (iii) 이와 같은 행위들의 거래내용의 불공정성도 인정되므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이익제공 강요” 및 “불이익 제공”이 성립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거래거절 중 기타의 거래거절 관련

피신고인이 2014년 1월에 신고인에 대한 카스맥주의 출고를 정지한 행위가 거래거절에 해당된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한편, 기타의 거래거절의 경우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i)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ii)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남용행위로서 행하여지거나 (iii)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여야만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신고인의 카스맥주에 대한 출고정지로 인해 신고인의 사업 계속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점은 명확하므로 “공정거래저해성” 역시 인정됩니다.

특히, 피신고인의 출고정지의 빌미가 된 피신청인의 추가담보의 제공 요구 및 이를 빌미로 한 일방적인 결제조건 축소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신고인의 출고정지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피신고인의 신고인에 대한 카스맥주 출고정지는 “거래거절” 중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사업활동방해 중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관련

추가적으로, 피신고인의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 그리고 이를 빌미로 한 출고조절 등 불이익 제공 및 일방적인 결제조건 축소, 더 나아가 출고정지에까지 이른 일련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로서, “사업활동방해” 중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신고인의 신고인에 대한 행위들은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i)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이익제공 강요” 및 “불이익제공”, (ii) “거래거절” 중 “기타의 거래거절” 그리고 (iii) 사업활동방해 중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귀 위원회께서는 피신고인에게 이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고 향후에도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시어, 피신고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 1. 소갑 제1호증 신고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
- 1. 소갑 제2호증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2004년에 체결한 거래계약서
- 1. 소갑 제3호증 국세청고시 제2011-17호
- 1. 소갑 제4호증 2005년 1월자 질권설정계약서, 산업금융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 1. 소갑 제5호증 2007년도 신고인의 외상매입금명세서
- 1. 소갑 제6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집합건물(아파트)
- 1. 소갑 제7호증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
- 1. 소갑 제8호증 신고인과 코사마트의 2012년 8월 27일 체결 거래계약서
- 1. 소갑 제9호증 박홍순의 진술서
- 1. 소갑 제10호증 2013년 11월 29일자 피신고인 담당직원의 문자메시지
- 1. 소갑 제11호증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관계 일지

첨 부 서 류

- 1. 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2014. 5. 28.

신고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박진석

공정거래위원회 귀중